

아산 한신더휴 | 당첨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

▣ 특별공급 공통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특별공급 공통서류	○		① 특별공급신청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 장소에 비치(정보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제출) 인터넷청약[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]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②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 [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] [장애인, 국가공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] 인터넷청약[청약Home(www.applyhome.co.kr)]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③ 무주택서약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⑤ 신분증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⑦ 인감도장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	⑧ 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⑨ 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⑩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⑪ 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공급 받으려는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제외
	○		⑫ 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 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⑬ 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해외에 체류 중(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 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*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특별공급 제외
	○		⑭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⑮ 복무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※ 군 복무 기간을 명시
	○		⑯ 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 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